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일반산업단지 지적 확정측량 수의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 ○급 ○○○

② 광주광역시○○○○ ○○ ○급 ○○○

내 용

○○ ○급 ○○○는 1993. 10.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에서 ○○일반산업단지 지적 확정측량 사업 실무담당자로, ○○ ○급 ○○○
은 2014. 10. 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 ○○○○팀에서는 ○○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조성되는
1,911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수차 지적확정 측량을
2014. 12. 31.부터 2015. 6. 30.까지 (주)○○○○○외 3개사와 1,424백만원에 계약
하여 추진하였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지적측량의뢰 규정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대상사업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요건에 해당
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¹⁾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광주광역시○○○○ ○○○○ ○○○○팀)의 수의계약 대상은 다른 법령에 위탁 또는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며, 지적 확정 측량은 해당법령에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에 되는 사업과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서(광주광역시○○○○ ○○○○ ○○○○팀)에서는 2014. 12. 18. ○○ 일반산단 및 ○○○마을 지적확정 측량 추진계획서에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968호)에 의거 정해지는 정액수수료임으로 가격 경쟁 입찰은 불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 심사기준을 정해 용역업체를 선정 수의계약 후 용역을

1) 광주광역시 질의 회신 2017. 4. 28.(구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060)

추진하겠다고 사장 방침을 받아 재무회계팀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결국 입찰방법 등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에서 선정한 (주)○○○○○ 외 3개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훈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장으로 하여금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등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